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7664   |
| 의 퇴 인 | 김희정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5.4.7. |
| 추계번호  | 25B0413   |

#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2조의2 신설<br>(주거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) |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(이하 “주거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<br>1.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및 지원<br>2.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주거실태 조사 지원<br>3.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<br>4.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·보급<br>5.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<br>6. 주거복지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보급<br>7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6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근거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2조의2 신설<br>(주거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) |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 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을 설립하고, 재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 - 개정안은 지난 2007년에 설립·운영 중인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주거복지재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('07.12.20)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며,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의 운영기관 선정, 입주자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
    - －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2025년 현재 재단은 총 66.5억원의 출연금(기부금 출연, 상세내역은 [참고자료]에서 확인)으로 운영되고 있음
  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지원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으로,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    - －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명시된 업무가 광범위하고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사례가 부재하여 재정소요를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 III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김신애 |

#### □ 대표연락처
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assembly.go.kr |

## [참고자료] 주거복지재단 사업현황

주거복지재단 2022년 감사보고서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### □ 설립취지

- 쪽방·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,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

### □ 설립근거 및 설립년도

- 「민법」 제32조
- 「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
- 설립년도: 2007년

### □ 사업영역

-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, 관리 및 평가(국토부 위임)
-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선정, 관리 및 평가(국토부 위임)
- 입주자 지원 및 개선
- 주거복지기관 간 연계, 교류 및 협력 지원
- 주거복지사업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
- 국토교통부, LH 등이 위탁한 주거복지사업 수행 등

### □ 주요수입(2025년)

- 기부금수입: 66.5억원(LH 60억원 출연, 주택도시보증공사 5억원, 건설공제조합 1억원, 전문건설공제조합 0.5억원 등)

### □ 사업비용(2025)

- 총사업비 53억원(공익목적사업 43.5억원 포함)
- 일반관리비: 9.5억원(인건비 3.5억원, 시설비용 4.7억원, 기타비용 1.3억원)